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69호

신촌지역(마포)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304호(2014.8.28.)로 지정·고시 된 신촌지역(마포)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11월 7일
서울특별시 장

1. 정비구역의 명칭 : 신촌지역(마포)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정비구역지정일(고시번호)
신촌지역(마포) 도시환경 정비구역	마포구 노고산동, 창전동 일대	76,078.6	2014.8.28. (서울특별시 고시-2014-304)

3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구분	구역명	정비사업 시행 기간	면 적(㎡)	비고
기정	신촌지역(마포) 도시환경 정비구역	2014.8.28~2019.8.28.	76,078.6	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제6항
변경		2014.8.28~2021.8.27.(2년간)		

4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

- 신촌지역(마포)은 지역중심지로서 대학 잠재력을 활용한 창조문화 거점 중심지로 육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전면 철거 이외의 소단위, 보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정비 계획 수립 예정으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 연장

5. 그 밖의 정비계획 : 변경없음

6.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(☎02-2133-4646) 및 마포구 도시계획과(☎02-3153-936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